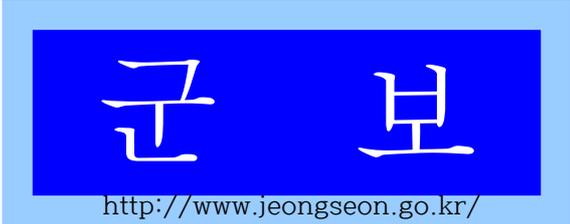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5호 2017. 12. 29.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16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8
- 정선군 조례 제2617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261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19
- 정선군 조례 제2619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정선군 조례 제2620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37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9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58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 조 례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16호

##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2. “수벽”이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3.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가로수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림등(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림등 조성·관리 계획(이 조안에서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도시림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서 구성한다.

- 1.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위촉해제·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① 도시림등의 수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2. 군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도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
-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5. 그 밖에 해당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9조(조성협의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및 군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 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를 따른다.

- 1. 도시림등 조성에 관한 사항: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식재 시기, 식재 제한지역 등
- 2. 도시림등 관리에 관한 사항: 바뀌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지형과 토양보전, 관리시설물, 점검, 관리대장, 주민참여 등
-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행)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 2.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제12조(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비용은 별표에 의거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위해 신청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별표에 의거 산정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상복구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13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비용의 산정 기준(제12조)

1. 사업 신청의 경우 (제12조제1항)

가. 식재 또는 이식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12조제5항 적용

2)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사업비 부담

나. 가지치기 또는 제거하는 경우

1)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12조제5항 적용

2)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사업비 부담

2. 피해발생의 경우(제12조제5항)

가.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비 부담

나.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수목비의 20%, 보호시설재료비 등 사업비 부담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다.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부담금: 원인자가 재료비 등 사업비 부담

○ 사업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의한 추정금액

○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제4조)
-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제5조)
- 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제12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17호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법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부허가기준 및 시설기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허가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시설 및 배치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4]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 하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허가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시설 및 배치 기준	1.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것,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4. 사업소 부지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통사항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중 1명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서 정한 해당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정의를 규정함. (제2조)
-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제3조)
- 별표에서 세부허가기준을 규정함. (제4조)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18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8조” 를 “법 제26조” 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토지는” 을 “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으로, “한다)” 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에 따른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 계획기준 (부지조성)을 준용한다.
-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 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 를 “「주택법」 제15조” 로 한다.

제3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7조제4호 중 “, 요양소 및 장례식장” 을 “및 요양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외”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사람”을 “의원”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 별표 14 제14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 별표 16 제12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 별표 17 제15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 별표 19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 별표 20 제16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 별표 22 제13호의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 제</p> <p>② 군수는 <u>법 제28조</u>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p> <p>② ---- <u>법 제26조</u>-----</p> <p>-----</p> <p>-----</p> <p>-----</p> <p>-----</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그 이상인 토지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u>별표 2</u>에 따른다.</p>	<p>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토지와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일단의 사면길이가 40미터 이상 되는 구간이 포함될 경우에는</u> -----</p> <p>----- <u>한다</u>),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u>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 상의 주 종단 경사도</u>에 따른다.</p>

3.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행방 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1. 2년 이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지 조성)을 준용한다.
- ④ 산지 등에서 벌목 후 토지이용에 따른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삭제>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1. -----  
-----  
-----  
----- 「주택법」  
제15조-----  
-----

한다.

2. ~ 5. (생략)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5. ~ 14. (생략)

<신설>

제58조(구성)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

--.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및 요양소

5. ~ 14. (현행과 같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5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 3. (생략)
- ④·⑤ (생략)
- ⑥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 ⑦ (생략)

-----  
 -----  
 -----  
 -----  
 -----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의원
2.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⑥ -----  
 -----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⑦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요청 및 개발행위 허가(태양광 등)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주요내용

- 경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피해 등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 (제2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 외에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취소 조항 삭제 (제27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제28호 장례시설을 신설 (제47조)
-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은 군수가 임명·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으로 개정 (제58조 제3항)
- 상위 법령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토록 개정 (제58조 제6항)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19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의3제2항” 을 “영 제6조의5제2항”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 를 “「주택법」 제15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제8조제3항제1호라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9조제2항제6호 중 “20제곱미터 이하인” 을 “50제곱미터 이하 인”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 점포.

제20조의2 중 “법 제25조제11항” 을 “법 제25조제12항” 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2항제3호” 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 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 단서” 를 “영 제86조제3항 단서” 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중위생관리법」” 을 “「관광진흥법」” 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 제80조제4항” 을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로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있다. 다만, 이미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3. (생략)

제8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의 자격·임명·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가. ~ 다. (생략)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생략)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  
-----  
-----.

1. -----  
-----따라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2. 3.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  
-----  
-----

영 제5조의2와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30.>

1. ~ 5. (생략)

6. 컨테이너 및 조립식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 8. (생략)

<신설>

----- 따른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50제  
곱미터 이하 인-

7. ~ 8. (현행과 같음)

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②·③ (생략)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이 있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

④ (생략)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2. (생략)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관광진흥법」-----  
-----  
-----

<p>4. (생 략)          ② (생 략)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② (생 략)          ③ 법 제80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3회로 한다.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생 략)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u>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입주자 공유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생 략)</p>	<p>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u>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하고, --.</u>          제38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          -----          -----          ③ (현행과 같음)</p>
--	---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규제개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대한 혼란 방지(제19조)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6.1.19.공포·시행)되어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에 대한 법 집행 혼란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함.

○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추가(제19조)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 내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를 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점포 반영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명시(제38조)

「건축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자 함

제241회 정선군의회(2017.12.19.)에서 의결된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0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을 “제15조”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하수관거 준설 등)”을 “(하수관로 준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수관거의”를 “하수관로의”로, “하수관거상태”를 “하수관로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규칙 제23조의 규정”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중 “하수관거”를 각각 “하수관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45조의 규정”을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96조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u>하수관거</u>를 말한다)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u>제15조</u>----- ----- ----- -----<u>하수관로</u>----- -----.</p>
<p>제5조(<u>하수관거 준설 등</u>) ①군수는 <u>하수관거의</u>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u>하수관거상태</u>를 점검하여야 한다.</p>	<p>제5조(<u>하수관로 준설 등</u>) ① ----- - <u>하수관로의</u> ----- ----- <u>하수관</u> <u>로상태</u>-----.</p>
<p>②<u>하수관거의</u>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p>	<p>② <u>하수관로</u>----- ----- ----- ----- -----.</p>
<p>제6조(<u>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u>) ①<u>법 제24조의</u>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p>	<p>제6조(<u>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u>) ① (삭 제)</p>

레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

② (생 략)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  
다.

1. (생 략)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  
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  
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  
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시행)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3조  
-----  
-----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  
-----  
-----  
-----  
-----  
-----  
-----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

----- . ---- 「건축법」 제22조 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

-----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  
-----  
-----  
-----  
하수관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수관로

-----하수관로-----

----- 하수관로 -----

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 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분뇨 수집·운반 대행 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생략)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월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하수관로-----  
-----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 대행) ①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  
-----  
----- 법 제45조-----  
-----  
-----.

<삭제>

제23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따른다.

<p>③ (생 략)</p> <p>제26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u>시장·군수·구청장</u>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p> <p>②<u>제1항의 규정</u>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u>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이의신청) ① ----- ----- ----- ----- ----- <u>군수</u> ----- -----.</p> <p>② <u>제1항</u>----- ----- <u>「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96조를 따른다.</u></p>
--	---

제안이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변경된 조문의 부분 삭제 (제2조)
- 「하수도법」 제2조에서 “하수관거” 를 “하수관로” 로 정의 (제5조, 제22조제1항, 제3항)
- 상위법에 위임 없이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삭제 (제6조제1항)
- 조례에 상위법 제명일부를 수정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제11조제1항)
- 관련법조항 개정으로 조례 문구 개정 (제13조제1항)
-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중 관련법 제명이 “「물환경보전법」” 으로 변경 (제15조제3항, 제18조제4항)
- 상위법에 위임 없는 조항으로 삭제 (제19조제4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제23조제1항, 제2항)
- 관련법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제23조의2 제2항)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정비 및 관련법 제명 및 법조항 수정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 규 칙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99호

##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일시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를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공사완료시”를 “공사완료 시”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를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공사취하신청서”를 각각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7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별도로 이를 징수한다”를 “제73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

불지급(충당)통지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 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삭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지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고	신고유형	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기타				
	사용년월일	년 월 일				
	배 출 량	생활하수	m <sup>3</sup> /인	사업장폐수	m <sup>3</sup> /인	
	급수실태	사용인구	인	연 건 평	m <sup>2</sup>	
사 항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 사용량	m <sup>3</sup> /월
	기 타 양수시설	유 형				
규 격						
대 수						
구 경						
기 타 참고사항						
<p>「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위치도 1부.</p>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양 수 시 설	모터규격	HP		설치개소수	대
	설치대수	대		구 경	m/m
	양수능력	m <sup>3</sup> /h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사용기간				
	사 용 량	일간	m <sup>3</sup>	월간	m <sup>3</sup>
	비 고				
<p>「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p>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감 수 량	제품명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수량(m <sup>3</sup> ) (비율%)	물사용량 (m <sup>3</sup> )	기타감수량 (m <sup>3</sup> )
하 수 도 사 용 량	용수총량(m <sup>3</sup> )		감수량(m <sup>3</sup> )		하수배출량(m <sup>3</sup> )	
<p>「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정선군수 귀하</p>						
첨부서류 : 입증서류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역	공사명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목적					
	공공하수도의 복구방법					
	사용수					
	배출량	일평균		m <sup>3</sup>	일평균	m <sup>3</sup>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신청인	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사종별	신축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사비			원	납부일자		
취하사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취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영수증사본 1 부.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 오 납 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환 불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 잔액 (환불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당 후의 미납 액			
<p>「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정 선 군 수</p>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환불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p> <p>정 선 군 수 귀하</p>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년 도	월 분	내 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금액을 영수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신청서

사 용 자	관리번호			업 태		
	주 소			상 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감면사유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3조(<u>일시 사용허가 신청</u>)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u> 다만, 일시 사용자가 <u>하수관거를 유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시 소속 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3조(<u>일시 사용신고</u>) ----- ----- ----- <u>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u> --. -- <u>하수관로</u>----- ----- ----- <u>공사완료 시</u> ----- -----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u></p> <p>제4조(<u>점용허가 신청</u>)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4조(<u>점용허가 신청</u>) ① ----- ----- <u>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u> -----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5조(<u>배수설비 설치신청</u>) ① <u>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u></p>	<p>제5조(<u>배수설비 설치신청</u>) ① --- ----- ----- <u>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u> --- -----.</p>

한다.

②·③ (생략)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익을 저해하거나 그 밖의 취하신청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  
-----  
-----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

② -----  
-----  
-----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③ -----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  
-----  
-----.

제8조(상수도 급수이외의 사용자 하수배출량 인정) ① -----  
-----  
-----.

1. -----  
-----  
----- 를

용한다.

2. (생 략)

② ~ ⑤ (생 략)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 ② (생 략)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 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부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별도로 이를 징수 한다.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및 부담금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 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른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따른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73조를 따 르다.

<삭 제>

제15조(과오납금 충당 및 환불)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 불지급(충당)통지서-----  
-----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불  
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  
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17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접용자 등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

2. 조례 제18조에 따라 하수배  
출량을 조사할 경우

3.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  
용료를 산정할 경우

4.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의 신  
청을 한 경우

제18조(위탁징수)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  
다.

제19조(사용료의 고지)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1호서  
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제16조(사용료 등 감면)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0조(가산금과 납입 독촉)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가산금을 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급수지역내의 장애인수용 및 이용시설 중 인가된 시설의 경우 하수도사용량의 30%를 감면한다.
3. 불출수 등 사유로 수도요금 이 감면된 사용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삭 제>

<삭 제>

람으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사용료 등의 부과취소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 징수금에서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환불금액, 이유,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을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과오납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 제출명령)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조례 제9조에 따라 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u></li><li>2. <u>조례 제14조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경우</u></li><li>3. <u>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접용료를 산정할 경우</u></li><li>4. <u>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u></li></ol> |  |
|--|--|

제안이유

- 상위 규정인 「하수도법」 및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 개정

주요내용

- 제3조 제목 “(일시 사용허가 신청)” 을 “(일시 사용신고)” 로 하고, 본문 중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를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로 하며, “하수관거” 를 “하수관로” 로, “공사완료시” 를 “공사완료 시” 로 개정(제3조)
-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을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로, 같은 조 제2항을 삭제(제4조제1항 및 제2항)
- 제5조제1항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 비공사” 로 수정(제5조제1항)
- 제6조제1항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 를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 비공사취하신청서” 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공사취하신청서” 를 각각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로 수정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 제8조제1항제1호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수정(제8조제1항제1호)
- 제15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을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 사용료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로,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로 수정 (제15조제2항, 제4항)
-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별지서식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제11호·제12호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인)” 을 (서명 또는 인)으로 수정